

행정대집행 고 고 서

성명 : 미상

주소 : 미상

파주시 농업정책과-30778(2026. 9. 1.)호, 농업정책과-32445(2026. 9. 15.)호와 관련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토지의 불법점용에 대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**2026년 10월 15일까지** 반드시 철거(원상복구)될 수 있도록 「농어촌정비법」 제128조제2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 고 합니다.

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,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위 고 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아 래 -

위치	대상 또는 종류	수량(위반사항)	대집행 방법
검산동 92-1번지 검산동 93-1번지	불법시설물(비닐하우스 등) 설치 및 폐기물 방치	불법시설물 및 폐기물 일체	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

2026년 10월 1일

파 주 시 장